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힘찬요양원

1. 입소정원 : 60명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 다.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자
- 라.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힘찬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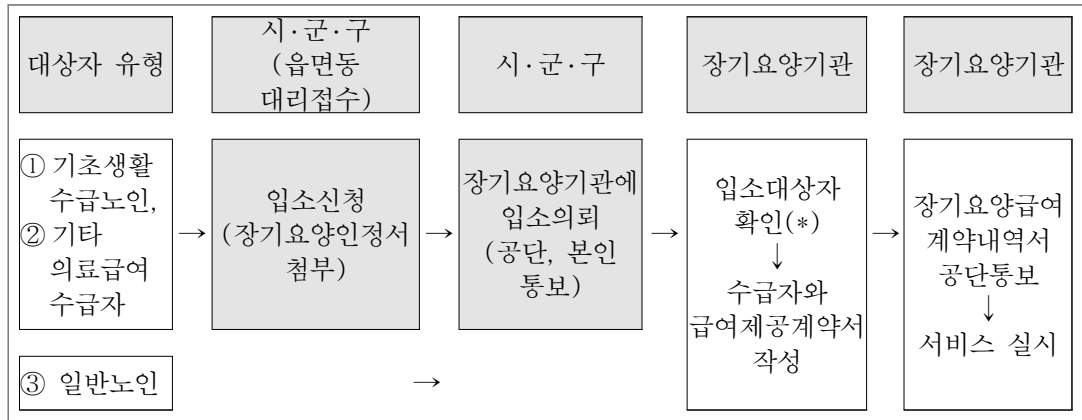
(2) 입소절차

- 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나. 힘찬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소 상세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3) 구비서류

힘찬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마.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력기록자료
- 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 입소계약

가. 힘찬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 ⑤ 입소보증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 ⑥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 ⑦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본 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힘찬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⑧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4) 합숙용(2~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⑨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⑩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 ⑪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힘찬요양원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⑫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힘찬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⑬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⑭ 제공서비스의 내용

- 1) 건강관리
- 2) 급식관리
- 3) 프로그램 활동
- 4) 요양서비스
- 5) 응급의료 및 후송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힘찬요양원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

나.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힘찬요양원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힘찬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3) 힘찬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구 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관리인	계약의사	총 원	비 고
인 원	1	1	1	5	1	27	1	1	1	39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등급 : 1, 2, 3, 4, 5등급

월 입소 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30일의 경우	본인부담금	542,700원	503,460원	475,440원
	식재료비	387,000원	387,000원	387,000원
	간식비	54,000원	54,000원	54,000원
	합 계	983,700원	944,460원	916,440원
31일의 경우	본인부담금	560,790원	520,242원	491,288원
	식재료비	399,900원	399,900원	399,900원
	간식비	55,800원	55,800원	55,800원
	합 계	1,016,490원	975,942원	946,988원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사재료비
 - 1식 4,300원 (1일 / 12,900원, 30일 / 387,000원, 31일 / 399,900원)
 - 경관식 1식 4,900원(1일/14,700원, 30일/441,000원, 31일/455,700원)
2. 간식비 (경관식 드시는 어르신은 제외)
 - 1일 / 1,800원(30일 / 54,000원, 31일 / 55,800원)
3. 상급침실 이용비
 - 1인실 : 30,000원/1일
 - 2인실 : 10,000원/1일
4. 기타 (아-미용비)
 - 무료

5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 (1) 대지면적 : 1,923 m²
- (2) 건축면적 : 362.96 m² (지하1층, 지상4층)

2. 시설 설비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상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비상대피시설	화장실	목욕실	세탁실
힘찬요양원	24	1	1	3	1	3	1	4	1	3	29	3	3

6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1.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보장기간 :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 II
- 보장기간 : 2025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참고자료]

2025년 입소비용 안내

1. 입소 수가 내역

2025년 입소비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단위 : 원/일)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90,450원	83,910원	79,240원

2.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 1일 3식 12,900원 (식사 1회 당 4,300원)

경관식 1일 3식 14,700원 (식사 1회 당 4,900원)

○ 간식비 : 1일 1,800원 (경관식 드시는 어르신은 제외)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예]

○ 1등급이신 어르신께서 30일을 힘찬요양원에 계실 경우

$30\text{일} \times 1\text{등급 } 1\text{일 급여비용} \times 20\% = \text{본인부담금}$

$\text{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 항목(식재료비} + \text{간식비)} = \text{한 달 시설 입소 비용}$

30일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5등급 어르신
983,700원	944,460원	916,440원

31일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5등급 어르신
1,016,490원	975,942원	946,988원